임 원 추 천 위 원 회 운 영 규 정

목 차

	제1조	목적	-1
	제2조	적용범위	-1
	제3조 '	임무	-1
	제4조 -	구성	-1
	제5조 :	위원장	-2
	제6조 -	위원	-2
	제7조 -	위원의 제척 등	-2
	제8조 -	위원회의 소집	-2
	제9조 :	의결방법	-3
	제10조	후보자 모집방법 결정	-3
	제11조	공개모집에 의한 후보자 모집	-3
	제12조	추천방식에 의한 후보자 모집	-3
	제13조	이해관계 임원의 참여 제한	-3
	제14조	제출서류	-3
	제15조	심사기준 및 방법	-4
	제16조	계약안 협의 등	-4
	제17조	임원후보자 추천	-4
	제18조	회의록	-5
	제19조	간사	-5
	제20조	수당	-5
	제21조	기타	-6
埥	그 칙		6

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

2007. 5. 3 제정(규정제793호) 2007.10.30 개정(규정제811호) 2008. 4.22 개정(규정제824호) 2010. 5.25 개정(규정제900호) 법률제11690호, 2013. 3.23(정부조직법 개정) 법률제12844호, 2014.11.19(정부조직법 개정) 2015. 9.24 개정(규정제1077호) 2017.11.29. 개정(규정제1159호) 2020.02.27. 일부개정(규정제1271호) 2022.07.27. 일부개정(규정제1383호)

- 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임원(이사장, 감사 및 비상임이사를 말한다)추 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0.5.25., 2017.11.29., 2022.07.27.>
- 제2조(다른 법령 및 정관과의 관계) 임원추천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에 관한 사항 중 법령 및 정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<개정 2022.07.27.>
- 제3조(임무)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0.5.25, 2013.3.23>
 - 1. 임원후보자 모집방법 결정
 - 2. 심사기준 결정 및 임원후보자 심사
 - 3. 임원후보로 추천될 자의 결정 및 추천
 - 4. 이사장후보로 추천될 자와의 계약안 협의 및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계약안 통보
 - 5.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
- 제4조(구성) ① 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5명에서 15명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 의결로 정하며, 비상임이사와 이사회가 선임한 위원으로 구성한다. 이 경우 비상임이사 중 노동이사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원이 될 수 없으며, 이사회가 선임하는 위원의 정수는 위원회 위원정수의 3분의 1이상 2분의 1미만으로 한다. <개정 2015.9.24., 2022.07.27.>
 - ② 위원회는 임기만료가 예정된 임원의 후임자 선정을 위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임원의 임기만료 2월 이전에 구성되어야 한다. 다만,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임원을 새로이 임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성한다.
 - ③ 위원회는 임원추천이 필요할 때마다 새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임원 직위결원이 여러 명이고, 그 결원발생 예정시기가 최초 결원발생 예정일로부터 3월 이내에 집중

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위원으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- ④ 위원회는 임원이 임명될 때까지 존속한다. 다만, 이사장의 경우 제16조의 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존속한다.
- 제5조(위원장)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비상임이사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 -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.
 - ③ 위원장이 사망, 사고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비상임이사인 위원 중 선임자,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제6조(위원) ① 이사회가 선임하는 위원은 법조계·경제계·언론계·학계 및 노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. 다만, 한국교통안전 공단(이하 "공단"이라 한다) 구성원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.<개정 2022.07.27.>
 - ② 공단의 임직원과 공무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. 다만, 「교육공무원법」에 따른 교원과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10.5.25. 2013.3.23>
 - ③ 위원은 공단의 특성을 반영하되, 성별·지역별로 균형 있게 구성되어야 하고, 남성 또는 여성위원의 비율이 위원정수의 80%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.2.27>
 - ④ 제1항의 '공단 구성원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'은 직급별 대표자 회의에서 복수로 추천된 자 중에서 이사회가 선임한다. 다만, 추천절차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사회가 선임할 수 있다.
 - ⑤ 제4항의 직급별 대표자회의는 6명이내로 구성하되, 비조합원 중에서는 이사장이, 조합원 중에서는 노동조합 위원장이 추천한 자로 구성한다. 이 경우 여직원 대표 1명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4.22>
 - ⑥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의 존속기간과 같다.
- 제7조(위원의 제척 등)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원후보자 심사에서 제척된다.
 - 1.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임원 후보자가 된 경우
 - 2. 위원이 임원 후보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
 - 3. 위원이 임원 후보자와 계약관계에 있거나 이와 동등한 관계에 있는 경우
 - ② 임원 후보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당사자의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. 다만, 위원장이 결정하기에 상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.
 -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 스로 심사를 회피할 수 있다.

- 제8조(위원회의 소집)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로 위원장이 소집한다.
 - ② 위원회 소집은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.
- 제9조(의결방법)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제10조(후보자 모집방법 결정) ① 위원회는 결원 예정 직위의 직무수행요건·공단의 업무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개모집, 추천방식, 공개모집·추천방식 병행의 3가지 방법 중에서 임원후보 모집방법을 결정한다.
 -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에 대해서는 공개모집 또는 공개모집·추천방식 병행의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.
 -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노동이사에 대해서는 추천방식의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.<개정 2022.07.27.>
 - ④ 위원회는 임원후보의 모집·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. 이 경우 전문기관은 인재채용·인재추천·인사컨설팅 등 인사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이와 관련된 상당한 업무수행 실적이 있는 업체에 한한다.<개정 2022,07.27.>
- 제11조(공개모집에 의한 후보자 모집) ① 임원후보자를 공개모집하는 경우에는 공단 인터 넷 홈페이지 및 1개 이상의 일간지에 공고하되 모집기간을 1주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, 국 토교통부·인사혁신처·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도 공고를 요청해야 한다. 다만, 신속한 채용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. <개정 2010.5.25, 2013.3.23, 2014.11.19>
 - ② 공개모집 또는 공개모집·추천방식 병행의 방법으로 임원후보자를 모집하는 경우, 응모자 및 추천된 자가 결원 예정 직위 수의 2배수에 미달하는 때에는 최초 공고와 동일한절차와 방법에 따라 재공고를 실시한다.
 - ③ 제2항에 따라 재공고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응모자 및 추천된 자가 결원예정 직위수의 2배수 이상이 될 수 있도록 공개모집·추천방식병행의 방법을 적용한다.
- 제12조(추천방식에 의한 후보자 모집) ① 임원후보자를 추천방식으로 모집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4항의 전문기관, 관련학계·단체, 인사혁신처(국가인재 DB),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의 추천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. 다만, 노동이사 후보자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(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대표자)의 추천이나 근로자 투표를 통한 선출 방법을 활용하여야 한다.<개정 2010.5.25, 2013.3.23., 2014.11.19., 2022.07.27.>
 - ② 제1항에 의해 추천된 후보자에 대해서도 공개모집 시와 동일한 기준과 방법에 따라 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한다.
- 제13조(이해관계 임원의 참여 제한) 위원회 구성을 위한 이사회의 심의 · 의결에 참여한

임원은 해당 시기 임원직위의 공개모집 또는 추천방식에 의한 모집에 참여할 수 없다.

- 제14조(자격요건 및 제출서류) 임원후보로 응모하는 자는 별표 1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하며,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 <2007.10.30>
 - 1. 이력서(사진첨부) 1부
 - 2. 자기소개서(경력 및 업적중심) 1부
 - 3. 직무수행계획서 1부
 - 4. 기타 심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자료
- 제15조(심사기준 및 방법) ① 위원회는 응모자·추천된 자에 대하여 별표 1의 임원후보 자격요건에 따라 심사하며, 세부 평가방법은 위원회에서 정한다. <2007.10.30>
 - ② 위원회는 직위별 특성을 고려하여 서류심사를 통해 결원인원의 적정배수에 해당하는 인원에 대해 면접심사를 실시하며 서류심사를 통과한 사람에 한해 면접심사를 실시한다. 다만, 비상임임원의 경우 면접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. <2007.10.30>
 - ③ 위원회가 면접심사를 실시할 때에는 응모자·추천된 자가 제출한 이력서, 자기소개서,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참고하여 적격여부를 심사한다.
 -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비상임이사 후보자로 선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 - 1. 공단 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
 - 2. 공단에 대한 회계감사 또는 세무대리를 하는 사람
 - 3. 공단과 법률자문·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변호사·공인회계사·세무사 및 그 밖에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사람
 - ⑤ 위원회가 응모자·추천된 자에 대해 심사한 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후보자 모집을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.
 - ⑥ 위원회가 제5항에 의해 후보자 모집절차를 다시 실시하였음에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의결로써 제5항에 의한 절차를 다시 거치지 아니하고 후보자를 직접 발굴하여 추천할 수 있다. 이때 후보자 발굴방법은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.
 - ⑦ 위원회 위원은 후보자 심사과정에서 알게 된 후보자 개인의 인적사항, 사생활 정보 등심사내용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고, 그 내용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.
- 제16조(계약안 협의 등) ① 위원회는 이사장의 임명과 관련하여 이사회에서 통보한 계약 안에 대하여 이사장후보로 추천하고자 하는 자와 계약내용과 조건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위원회는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계약안의 내용이나 조건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.
 - ② 위원회는 제1항에 의한 계약안 협의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<개

정 2010.5.25, 2013.3.23>

- 제17조(임원후보자 추천) ① 위원회는 임원으로서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, 능력을 갖춘 사람을 임원후보자로 추천하여야 한다.
 - ② 위원회는 3배수부터 5배수까지로 임원후보자를 선정하여 우선순위 없이 추천하되, 직위특성, 대상직위수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3배수 미만으로 후보자를 선정·추천할 수 있으며, 후보자 추천은 이사장 및 비상임이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, 감사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각각 추천한다. 이 경우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07.10.30, 2010.5.25., 2013.3.23., 2020.2.27.>
 - 1.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
 - 2. 후보자 모집 시 추천자의 추천서(추천방식 또는 공개모집·추천방식 병행시 추천방식 에 의해 추천된 후보자에 한하다)
 - 3. 임원추천위원회 회의록
 - 4. 임원추천위원회의 후보자 추천서(별표 2 서식)
 - 5. 후보자 선발경과 요약서(별표 3 서식)
 - ③ 위원회가 비상임이사를 추천하는 경우 기존 비상임이사와 성별, 지역 등이 적절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, 특히 여성이 비상임이사 정수의 100분의 30이상 임명될 수 있도록 고려하여야 한다.
 - ④ 위원회가 응모자·추천된 자에 대해 심사한 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후보자 모집을 다시 실시하여야한다. <신설 2020.2.27.>
 - ⑤ 위원회가 제4항에 의하여 후보자 모집절차를 다시 실시하였음에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의결로써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다시 거치지 아니하고 후보자를 직접 발굴하여 추천할 수 있다. 이 때 후보자 발굴방법은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. <신설 2020.2.27.>
 - ⑥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2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원이 연임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추천을 거치지 아니한다. <신설 2020.2.27.>
- 제18조(회의록) ① 위원회에서 심의·의결 보고된 사항에 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.
 - ②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, 공개함으로써 위원 또는 후보자의 신상이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은 공개대상에서 제외한다.
 - ③ 정보의 공개범위 및 내용은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위원회에서 정한다.
- 제19조(간사)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. 이 경우 간사는 위원회

운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.

- ② 간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- 1.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및 관리
- 2. 위원회의 소집 및 심사결과 관리
- 3.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
- 제20조(수당) 위원의 위원회 참석수당 및 지방 응시자의 면접여비는 이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.
- 제21조(기타)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.

부 칙 <규정 제793호, 2007.05.03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07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규정의 폐지) 다음 각 호의 규정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.

- 1. 이사장추천위원회운영규정
- 2. 이사후보추천위원회운영규정

부 **칙** <규정 제811호, 2007.10.30>

이 규정은 2007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규정 제824호, 2008.04.22>

이 규정은 2008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규정 제900호, 2010.05.25>

이 규정은 2010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규정 제1077호, 2015.09.24>

이 규정은 2015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규정 제1159호, 2017.11.29>

이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규정 제 1271호, 2020.02.27>

이 규정은 2020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규정 제1383호, 2022.07.27>

이 규정은 2022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4조, 제10조 및 제12조의 개정 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 노동이사를 임명하기 위하여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[별표 1](제14조 및 제15조제1항 관련) <개정 2007.10.30, 2010.5.25>

임원후보자격요건

직 위	역 량
이 사 장	 최고 경영자로서의 리더십과 비전 제시 능력 해당 분야와 관련한 지식과 경험 조직관리 및 경영능력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 공공성과 기업성의 조화 능력
상임이사	·해당 분야와 관련한 지식과 경험 ·리더십과 조직관리능력 ·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 ·공공기관 운영에 대한 이해 능력
비상임이사	·경영에 대한 지식과 경험 ·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 ·공공기관 운영에 대한 이해 능력
감사(비상임)	·조직운영 및 경영에 대한 감시 능력 ·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 ·해당 분야의 업무 이해도 ·공공기관 운영에 대한 이해 능력

[별표 2] (제17조제2항 관련) <개정 2020.2.27>

후보자 추천서

한국교통안전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일동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에 의거, 아래와 같이 () 직위 후보자를 복수추천하기로 의결함

연번	성 명	생년월일	비고

^{*} 작성은 성명 가나다순

(별첨 1 : 추천 후보자 인적사항, 별첨 2 : 세부 추천사유)

20 년 월 일

한국교통안전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 〇〇〇 (서 명)

위 원 ○○○ (서 명)

[별첨 1] **추천후보자 인적사항** ※ 기관장의 경우 <신설 2020.2.27>

(예시)

성 명	출 생	학 력	주 요 경 력
000	○ ○ 60.3.10	· ○ ○ 고 · ○ ○ 대 ○ ○ 학 · ○ ○ 대 ○ ○ 학 석사 · ○ ○ 대 ○ ○ 학 박사	※최근 경력부터 3~4개 기재 · ○ ○ ○ ○ ○ ○ (12.7~현재) · ○ ○ ○ ○ ○ ○ (05.3~12.7) · ○ ○ ○ ○ ○ ○ (02.11~05.3) · ○ ○ ○ ○ ○ ○ (96.2~02.11)
000			
〇〇〇 (女)			

< 참고 >

- * 출생지는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기재(예 : 강원, 서울)
- * 생년월일은 예(50.6.25)에 따라 기재
- * 여성의 경우, 성명 밑에 (女)로 표기
- * 주요경력은 최근경력 순으로 3~4개 정도를 기재

[별첨 1] 추천후보자 인적사항 ※ 견제임원의 경우 <신설 2020.2.27>

(예시)

성 명	출 생	학 력	주 요 경 력	이해관계 유무
000	O O 60.3.10	·○○고(75) ·○○대 ○○학(78) ·○○대 ○○학 석사(84) ·○○대 ○○학 박사(88)	**최근 경력부터 3~4개 기재 · ○ ○ ○ ○ ○ ○ (12.7~현재) · ○ ○ ○ ○ ○ (05.3~12.7) · ○ ○ ○ ○ ○ ○ (02.11~05.3) · ○ ○ ○ ○ ○ (96.2~02.11)	무
000				무
〇〇〇 (女)				무

< 참고 >

- * 출생지는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기재(예 : 강원, 서울)
- * 생년월일은 예(50.6.25)에 따라 기재
- * 여성의 경우, 성명 밑에 (女)로 표기
- * 주요경력은 최근경력 순으로 3~4개 정도를 기재
- * 이해관계 심사 대상
 - 「공기업·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」 제19조 제2항 해당여부
 - 갑을관계, 계약관계(금전급부가 있는 용역 등)에 있는지 또는 있었는지
 - 자기 사업에 유리하도록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지
 - 그밖에 기관의 특성 및 영위사업 등을 고려하여 이해관계 유무를 판단
 - ※ 자문, 심의위원회 등의 위원참여는 이해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함

[별첨 2] 세부 추천사유 <신설 2020.2.27>

(예시)

성 명	현 직	추천 사유
000	ㅇㅇ대 00학과 교수	* 해당직위에 후보자가 적임자라는 설명을 기술 <기관장의 경우> -(예) 학력, 경력, 저술활동 등 후보자의 특정 이력이 기관의 주요업무와 부합하는 전문성, 공익성 등이 있는 지 -(예) 어느 면에서 기업경영과 기관의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 지 -(예) 어느 면에서 최고경영자의 능력을 갖추었다고 보는 지 -(예) 후보자의 어느 분야 경력(또는 경험)이 기관의 어느 업무와 관련하여 전문성이 있는 지 등 <건제임원의 경우> -(예) 학력, 경력, 저술활동 등 후보자의 특정 이력이 기관의 주요업무와 부합하는 어느 분야의 전문성, 공익성 등이 있는 지 -(예) 공공부문에서 어느 업무경험이 있는 지 -(예) 견제임원으로서의 자질 등을 어느 경력에 근거하여 갖추었는 지 -(예) 어떤 분야의 경력(또는 경험)이 기관의 어느 업무와 관련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보는 지 등
000		- - -
000		- - -

[별표 3] (제17조제2항 관련) <개정 2020.2.27>

후보자 선발경과 요약서 (예시 포함)

1. 선발 개요

- □ 선발 직위
 - ㅇㅇㅇ직위(ㅇㅇㅇ) 임기만료(20ㅇㅇ.ㅇ.ㅇ)에 따른 후임자 선발
- □ 선발방법
 - ㅇ 근 거 :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 의결
 - ㅇ 방 법 : 공개모집
 - ㅇ 모집 세부내용

구 분 공고 기간		인 원	접수 기간	비고
공개모집	00.0.00~0.00	0명	00.0.00~0.00	
0 川工日	(ㅇㅇ일간)	(여성: ㅇ명)	(ㅇㅇ일간)	

- □ 임원추천위원회 구성: ○○.○.○○(○)
- □ 임원추천위원회 개최 : ○○.○.○○(○)~○.○○(○)

※ 1차 : ㅇㅇ.ㅇ.ㅇㅇ(ㅇ), 2차 : ㅇ.ㅇㅇ(ㅇ), 3차 : ㅇ.ㅇㅇ(ㅇ)

ㅇ 응모자 ㅇㅇ명중 ㅇ명을 ㅇㅇ직위 후보자로 추천

2. 모집 개요

- □ 공개모집 공고
 - ㅇ 일간지 : ㅇㅇ신문 공고(ㅇㅇ.ㅇ.ㅇㅇ)
 - 홈페이지 : ○○공사·○○○○부·인사혁신처·기획재정부·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(○○.○.○○~○.○○)
 - ※ 접수기간 : ㅇㅇ.ㅇ.ㅇㅇ~ㅇ.ㅇㅇ까지(ㅇㅇ일간)

3. 응시자 현황 : ㅇㅇ명 (접수순)

응시 번호	성 명 (생년월일)	학 력	주요 경력	비고
1				
2				
3				
4				
5				
6				
7				
8				
9				
10				

4. 임원추천위원회 구성현황(총 ㅇ명)

유형	성 명 (성별)	소속 및 직위	주요 경력	비고
				-
				-
비상임이사 (ㅇ명)				-
				-
				ı
				농업계
이사회추천				여성계
(ㅇ명)				학계
				구성원 대변자